

#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70,000,000	26,100,000
일반회계	785,890,000	23,576,700
특별회계	84,110,000	2,523,300
공기업특별회계	59,900,000	1,797,000
수도사업특별회계	34,800,000	1,044,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5,100,000	753,000
기타특별회계	24,210,000	726,300
수질개선특별회계	4,770,000	143,1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850,000	85,50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1,499,000	44,97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027,000	90,81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340,000	40,200
치수사업특별회계	2,428,000	72,840
기반시설특별회계	360,000	10,800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996,000	29,880
주차장특별회계	6,940,000	208,2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784,835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6,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